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290

제안연월일: 2024. 2. .

제 안 자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「제9대 영등포구의회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」이 결정·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월 900,000원에서 1,200,000원으로,
보조활동비를 월 200,000원에서 300,000원으로 개정(별표 1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약 8,160만 원(월 400,000원×12개월×17명) 추가 소요

다. 입법예고(2024.2.19.~2.23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의 정 활 동 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 조 활 동 비
지 급 액	월 1,200,000원	월 300,000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
소급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〔별표 1〕			〔별표 1〕		
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(제2조 제3항 관련)			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(제2조 제3항 관련)		
구분	의정활동비		구분	의정활동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	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지급액	월 900,000원	월 200,000원	지급액	월 1,200,000원	월 300,000원